선결	지부장	홍종선
접수일시	2018. 03. 28	번호 2446
담당	서홍주	홍보해양경찰

" 함께하는 바다, 다시 뛰는 바다! "

해양수산부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항행안전에 관한 고시 개정 보고(통보)

1. 「해사안전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우리청에서 고시한 "항행안전에 관한 고시"(4건)의 재검토기한(시행 후 3년이내 범위)이 도래하여 동 고시에 대한 필요성 등을 검토한 결과 계속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붙임과 같이 개정하였음을 보고(통보)합니다.

2. 각 과·소 및 관계기관에서는 동 고시를 관련 업·단체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우리청 홈페이지(알림마당-공지사항)에서도 검색 및 내려받기가 가능합니다.

붙임 1. 매물수도 항행안전에 관한 고시 1부
2. 홍도 및 흑산도해역 항행안전에 관한 고시 1부
3. 완도항 인근해역 항행안전(지정항로)에 관한 고시 1부
4. 완도항 인근해역 항행안전(추천항로)에 관한 고시 1부. 끝.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

수신자 해양수산부장관(해사안전정책과장), 항만물류과장, 해양수산환경안전과장, 항로표지과장, 진도항로표지사무소장, 목포지방해양안전심판원장, 신안군수(해양수산과장), 진도군수(수산지원과장), 완도군수(해양수산정책과장), 선박안전기술공단 목포지부장, 선박안전기술공단 목포지부장(운항관리센터장), 선박안전기술공단 완도지부장, 선박안전기술공단 완도지부장(운항관리센터장), (사)한국선급 목포지부장, 수협중앙회 목포어업정보통신국장, 한국해운조합 목포지부장, 한국해운조합 완도지부장, 목포해양경찰서장(경비구조과장), 목포해양경찰서장(해양안전과장), 완도해양경찰서장(경비구조과장), 완도해양경찰서장(해양안전과장), 서해지방해양경찰청장(구조안전과장), 서해지방해양경찰청장(진도연안해상교통관제센터), 서해지방해양경찰청장(완도항해상교통관제센터장)

주무관	김용진	주무관	이호훈	과장	전결 2018.3.27. 백철호

협조자

시행 선원해사안전과-2921 (2018. 3. 27.) 접수

우 58746 전라남도 목포시 통일대로 130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선원해사안전과 / http://mokpo.mof.go.kr

전화번호 061-280-1644 팩스번호 061-280-1655 / kyj1869@korea.kr / 비공개(5)

목포지방해양수산청고시 제2018 - 20호

매물수도 항행안전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8년 3월 27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

매물수도 항행안전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해사안전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해역이 아닌 해역으로서 해양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많다고 인정되는 해역을 항행하는 선박의 안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이 고시는 매물수도를 항행하는 모든 선박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지정항로의 준수등) ① 선박이 [별표1] 의 지정항로를 따라 항행할 경우에는 그 항행방향에 따라야 하며, 분리선 또는 분리대에서 될 수 있는 대로 떨어져서 항행하여야 한다.
② 선박이 지정 항로를 따라 항행할 때는 [별표2] 의 항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4조 삭제 <2012.03.28.>

제5조(지정항로 이외의 항로) 지정항로를 항행하지 아니하는 선박은 지정항로로부터 충분히 떨어져서 항행하여야 한다.

제6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의 필요성을 재검토하여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1년 3월 26일까지로 한다.

부 칙 〈1992 · 1 · 20〉

이 고시는 1992. 3. 1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5 · 12 · 6〉

이 고시는 1996. 3. 6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4 · 7 · 19〉

이 고시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1 · 5 · 16〉

이 고시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2 · 3 · 30〉

이 고시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5 · 4 · 1〉

이 고시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8 · 3 · 27〉

이 고시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지정항로 (WGS-84)

지정항로	구 분	적 용 수 역
북매물수도 항로	분리대	다음 각호의 기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내수역 (1) 34° 34′21″N, 125° 34′53″E (2) 34° 34′21″N, 125° 36′29″E (3) 34° 31′21″N, 125° 36′29″E (4) 34° 28′21″N, 125° 36′53″E (5) 34° 28′02″N, 125° 35′19″E (6) 34° 31′21″N, 125° 34′53″E
	서항로	다음 각호의 기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내수역 (1) 34° 34′21″N, 125° 33′05″E (2) 34° 34′21″N, 125° 34′53″E (3) 34° 31′21″N, 125° 34′53″E (4) 34° 28′02″N, 125° 35′19″E (5) 34° 27′52″N, 125° 33′39″E (6) 34° 31′21″N, 125° 33′05″E
	동항로	다음 각호의 기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내수역 (1) 34° 34′21″N, 125° 36′29″E (2) 34° 34′16″N, 125° 38′17″E (3) 34° 31′21″N, 125° 38′17″E (4) 34° 28′21″N, 125° 38′39″E (5) 34° 28′21″N, 125° 36′53″E (6) 34° 31′21″N, 125° 36′29″E
남매물수도 항로	분리대	다음 각호의 기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내수역 (1) 34° 13′06″N, 125° 37′38″E (2) 34° 13′08″N, 125° 39′14″E (3) 34° 09′18″N, 125° 39′49″E (4) 34° 06′08″N, 125° 44′59″E (5) 34° 05′03″N, 125° 44′05″E (6) 34° 08′45″N, 125° 38′17″E

지정항로	구 분	적 용 수 역
남매물수도 항로	서항로	다음 각호의 기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내수역 (1) 34° 13′03″N, 125° 35′50″E (2) 34° 13′06″N, 125° 37′38″E (3) 34° 08′45″N, 125° 38′17″E (4) 34° 05′03″N, 125° 44′05″E (5) 34° 03′47″N, 125° 43′05″E (6) 34° 08′05″N, 125° 36′36″E
	동항로	다음 각호의 기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내수역 (1) 34° 13′08″N, 125° 39′14″E (2) 34° 13′11″N, 125° 41′02″E (3) 34° 09′58″N, 125° 41′30″E (4) 34° 07′24″N, 125° 45′59″E (5) 34° 06′08″N, 125° 44′59″E (6) 34° 09′18″N, 125° 39′49″E

【별표 2】 지정항로내 항법

항 로 명	항 법
북·남매물수도 항로	선박이 북쪽으로 항행하고자 할 때에는 동항로로 항행하여야 하고 남쪽으로 항행하고자 할때에는 서항로로 항행하여야 하며, 기타 항법에 대하여는 해사안전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통항분리 해역에서의 항법을 준수한다.

목포지방해양수산청고시 제2018 - 21호

홍도 및 흑산도해역 항행안전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8년 3월 27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

홍도 및 흑산도해역 항행안전에 관한 고시

제1조(목 적) 이 고시는 해사안전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해역이 아닌 해역으로서 해양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많다고 인정되는 해역을 항행하는 선박의 안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 용) 이 고시는 홍도 및 흑산도 해역을 항행하는 모든 선박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지정항로의 준수 등) ① 선박이 〔별표1〕의 지정항로를 따라 항행할 경우에는 그 항행 방향에 따라야 하며, 실행가능한 한 지정항로의 오른편 끝쪽으로 항행하여야 한다.

② 선박이 지정항로를 따라 항행 할 때에는 〔별표2〕의 항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4조(지정항로 이외의 항로) 지정항로를 항행하지 아니하는 선박은 지정항로로부터 충분히 떨어져서 항행하여야 한다.

제5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의 필요성을 재검토하여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1년 3월 26일까지로 한다.

부 칙 〈1994 · 11 · 25〉

이 고시는 1994년 1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4 · 7 · 19〉

이 고시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1 · 5 · 16〉

이 고시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2 · 3 · 30〉

이 고시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5 · 4 · 1〉

이 고시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8 · 3 · 27〉

이 고시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지정항로 (WGS-84)

지정항로명	구 분	적 용 수 역	비 고
홍도 제1항로	서항로	다음 각호의 기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내수역 (1) 34° 43′54″N, 125° 12′15″E (2) 34° 43′57″N, 125° 11′45″E (3) 34° 43′34″N, 125° 10′41″E (4) 34° 43′28″N, 125° 10′50″E (5) 34° 43′49″N, 125° 11′43″E (6) 34° 43′46″N, 125° 12′14″E	
	동항로	다음 각호의 기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내수역 (1) 34° 43′43″N, 125° 12′15″E (2) 34° 43′47″N, 125° 11′43″E (3) 34° 43′25″N, 125° 10′53″E (4) 34° 43′19″N, 125° 11′02″E (5) 34° 43′38″N, 125° 11′43″E (6) 34° 43′34″N, 125° 12′14″E	
	분리대	다음 각호의 기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내수역 (1) 34° 43′43″N, 125° 12′15″E (2) 34° 43′47″N, 125° 11′43″E (3) 34° 43′25″N, 125° 10′53″E (4) 34° 43′28″N, 125° 10′50″E (5) 34° 43′49″N, 125° 11′43″E (6) 34° 43′46″N, 125° 12′14″E	
홍도제2항로	동항로 (일방항로)	다음 각호의 기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내수역 (1) 34° 43′24″N, 125° 12′06″E (2) 34° 43′03″N, 125° 11′53″E (3) 34° 42′59″N, 125° 12′02″E (4) 34° 43′21″N, 125° 12′13″E	

지정항로명	구 분	적 용 수 역	비 고
흑산항로	서항로	다음 각호의 기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내수역 (1) 34° 42′38″N, 125° 28′08″E (2) 34° 42′38″N, 125° 27′36″E (3) 34° 42′31″N, 125° 27′36″E (4) 34° 42′31″N, 125° 28′08″E	
	동항로	다음 각호의 기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내수역 (1) 34° 41′57″N, 125° 27′33″E (2) 34° 41′52″N, 125° 27′29″E (3) 34° 41′38″N, 125° 27′54″E (4) 34° 41′44″N, 125° 27′58″E	
흑산/홍도항로	서항로	다음 각호의 기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내수역 (1) 34° 42′38″N, 125° 26′37″E (2) 34° 42′41″N, 125° 26′06″E (3) 34° 42′33″N, 125° 26′04″E (4) 34° 42′30″N, 125° 26′36″E	
	동항로	다음 각호의 기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내수역 (1) 34° 42′27″N, 125° 26′36″E (2) 34° 42′29″N, 125° 26′05″E (3) 34° 42′21″N, 125° 26′03″E (4) 34° 42′19″N, 125° 26′35″E	
	분리대	다음 각호의 기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내수역 (1) 34° 42′30″N, 125° 26′36″E (2) 34° 42′33″N, 125° 26′05″E (3) 34° 42′29″N, 125° 26′04″E (4) 34° 42′27″N, 125° 26′36″E	

【별표 2】 지정항로내 항법

지정항로	적 용 수 역	비 고
홍도 제1,2항로	1. 홍도항을 입항하고자 할 때에는 홍도제1항로의 서항로로 운항하여야 하고, 출항하고자 할 때에는 동항로를 항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선박안전운항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홍도제2항로를 이용하여 출항할 수도 있다. 3. 지정항로 부근을 항행하는 선박은 지정항로를 이용하여 항행하는 선박의 항행을 방해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항로내에서는 타선박과의 안전거리를 유지하여 위험상황 발생시 적절한 거리에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흑산항로	1. 흑산항을 입항하고자 할 때에는 서항로로 항행하여야 하고, 출항하고자 할 때에는 동항로로 항행하여야 한다. 2. 지정항로 부근을 항행하는 선박은 지정항로를 이용하여 항행하는 선박의 항행을 방해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항로내에서는 타선박과의 안전거리를 유지하여 위험상황 발생시 적절한 거리에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흑산/홍도 항로	1. 흑산항을 입항하고자 할 때에는 동항로로 항행하여야 하고, 출항하고자 할 때에는 서항로로 항행하여야 한다. 2. 지정항로 부근을 항행하는 선박은 지정항로를 이용하여 항행하는 선박의 항행을 방해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항로내에서는 타선박과의 안전거리를 유지하여 위험상황 발생시 적절한 거리에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목포지방해양수산청고시 제2018 - 22호

완도항 인근해역 항행안전에 관한 사항(지정항로)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8년 3월 27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

완도항 인근해역 항행안전(지정항로)에 관한 고시

제1조(목 적) 이 고시는 해사안전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안전특정해역이 아닌 해역으로서 해양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많다고 인정되는 완도항 인근해역을 항행하는 선박의 안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 용) 이 고시는 완도항을 입·출항하거나, 완도항 출입 해역을 횡단하는 선박에 적용한다.

제3조(지정항로의 준수등) ① 선박이 [별표 1]의 지정항로를 따라 항행할 경우에는 그 항행방향에 따라 항행하여야 한다.
② 선박이 지정항로를 따라 항행할 때에는 [별표2]의 항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4조(지정항로 이외의 항로) 지정항로를 따라 항행하지 아니하는 선박은 지정항로로부터 충분히 떨어져서 항행하여야 한다.

제5조(기타 항법) 이 고시에서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해사안전법에 규정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6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의 필요성을 재검토하여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1년 3월 26일까지로 한다.

부 칙

① 이 고시는 200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 고시의 폐지) 종전의 항행안전에 관한 고시(목포지방해양수산청제2002-60호, 2002.10.31)는 이 고시의 시행일부터 이를 폐지한다.

부 칙 〈2012 · 12 · 14〉

이 고시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5 · 4 · 1〉

이 고시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8 · 3 · 27〉

이 고시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지정항로

항 로 명	구 분	적 용 수 역
완도항 출입 및 횡단항로	분리대	1. 다음 각호의 기점을 연결한 선안의 해면 ① 북위 34도 16분 21초, 동경 126도 54분 04초 ② 북위 34도 15분 22초, 동경 126도 49분 03초 ③ 북위 34도 15분 12초, 동경 126도 49분 03초 ④ 북위 34도 16분 11초, 동경 126도 54분 06초
		2. 다음 각호의 기점을 연결한 선안의 해면 ① 북위 34도 17분 01초, 동경 126도 48분 36초 ② 북위 34도 17분 01초, 동경 126도 48분 24초 ③ 북위 34도 15분 39초, 동경 126도 48분 24초 ④ 북위 34도 15분 39초, 동경 126도 48분 36초
		3. 다음 각호의 기점을 연결한 선안의 해면 ① 북위 34도 15분 16초, 동경 126도 47분 57초 ② 북위 34도 15분 20초, 동경 126도 45분 19초 ③ 북위 34도 15분 10초, 동경 126도 45분 19초 ④ 북위 34도 15분 06초, 동경 126도 47분 57초
		4. 다음 각호의 기점을 연결한 선안의 해면 ① 북위 34도 14분 45초, 동경 126도 48분 36초 ② 북위 34도 14분 45초, 동경 126도 48분 24초 ③ 북위 34도 13분 36초, 동경 126도 48분 24초 ④ 북위 34도 13분 36초, 동경 126도 48분 36초
	통항분리 항로	다음 각호의 기점을 연결한 선안의 해면에서 위의 분리대를 제외한 해면 ① 북위 34도 16분 42초, 동경 126도 53분 58초 ② 북위 34도 15분 50초, 동경 126도 49분 30초 ③ 북위 34도 17분 01초, 동경 126도 49분 03초 ④ 북위 34도 17분 01초, 동경 126도 47분 57초 ⑤ 북위 34도 15분 39초, 동경 126도 47분 57초 ⑥ 북위 34도 15분 42초, 동경 126도 45분 20초 ⑦ 북위 34도 14분 47초, 동경 126도 45분 18초 ⑧ 북위 34도 14분 44초, 동경 126도 47분 57초 ⑨ 북위 34도 13분 36초, 동경 126도 47분 57초 ⑩ 북위 34도 13분 36초, 동경 126도 49분 04초 ⑪ 북위 34도 14분 49초, 동경 126도 49분 04초 ⑫ 북위 34도 15분 49초, 동경 126도 54분 12초

【별표 2】항 법

항 로 명	항 법
완도항 출입 및 횡단항로	1. 주위의 상황에 적합하고 적절한 경계를 하여야 하며, 항로의 출·입구 부근에서는 특히 주의 하여 항행하여야 한다. 2. 지정항로 부근을 항행하는 선박은 지정항로를 따라 항행하고 있는 다른 선박의 통항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3. 지정항로를 따라 항행하는 선박은 해사안전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한 속력으로 항행하여야 한다. 4. 여기서 정한 항법 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해사안전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통항분리수역에서의 항법을 준용한다.

목포지방해양수산청고시 제2018 - 23호

완도항 인근해역 항행안전에 관한 사항(추천항로)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8년 3월 27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

완도항 인근해역 항해안전(추천항로)에 관한 고시

제1조(목 적) 이 고시는 교통안전특정해역이 아닌 해역으로서 해양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섭도~어룡도에 이르는 해역(완도항 출입 및 횡단 항로는 제외)을 항행하는 선박들에게 해사안전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추천항로를 권고함으로써 선박의 교통질서를 확립하고 교통원활을 도모하여 해양사고를 예방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적 용) 이 고시는 섭도~어룡도에 이르는 수로(완도항 출입 및 횡단항로는 제외)를 통항하는 선박에 적용한다.

제3조(추천항로) 이 고시에 의한 추천항로는 선박의 교통질서를 확립하고 교통원활을 도모하기 위하여 권고하는 항로로서 그 명칭 및 적용수역은 [별표 1]과 같다.

제4조(경계해역) 이 고시에 의한 경계해역은 연안 여객선이 빈번하게 항행하여 항행시 특별한 주의를 요하는 해역으로서 그 범위는 [별표 2]와 같다.

제5조(항법) 이 고시에 의한 추천항로를 따라서 항행하는 선박은 다음 각 호의 항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주위의 상황에 적절한 경계를 유지하여야 하며, 경계해역 및 항로의 출입구 부근에서는 특히 주의하여 항행하여야 한다.
2. 해사안전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한 속력으로 항행하여야 한다.
3. [별표 1]의 추천항로에 근접하여 항행하여야 하며, 가급적 항로로부터 멀리 벗어나지 않고 추천항로에 근접하여 항행하되 추천항로선의 오른편으로 항행하여야 한다. 만약, 두척의 동력선이 마주치거나 거의 마주치게 되어 충돌의 위험이 있을 때에는 해사안전법 제72조(마주치는 상태)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제6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의 필요성을 재검토하여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1년 3월 26일까지로 한다.

부 칙

① 이 고시는 200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 고시의 폐지) 종전의 항행안전에 관한 고시(목포지방해양수산청제2002-61호, 2002.10.31)는 이 고시의 시행일부터 이를 폐지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2 · 3 · 30〉

이 고시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5 · 4 · 1〉

이 고시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8 · 3 · 27〉

이 고시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추천항로

항로명	구 분	적 용 수 역
횡간수도 항로	명량수도 방향	다음 각호의 기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 ① 북위 34도 15분 15초, 동경 126도 45분 19초 ② 북위 34도 15분 53초, 동경 126도 31분 49초 ③ 북위 34도 17분 50초, 동경 126도 29분 04초 ④ 북위 34도 19분 22초, 동경 126도 26분 50초
	장죽수도 방향	다음 각호의 기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 ① 북위 34도 15분 15초, 동경 126도 45분 19초 ② 북위 34도 15분 53초, 동경 126도 31분 49초 ③ 북위 34도 17분 50초, 동경 126도 29분 04초 ④ 북위 34도 17분 53초, 동경 126도 26분 11초
소덕우도 항로	-	다음 각호의 기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 ① 북위 34도 18분 16초, 동경 127도 10분 29초 ② 북위 34도 17분 23초, 동경 127도 08분 17초 ③ 북위 34도 17분 36초, 동경 127도 00분 16초 ④ 북위 34도 16분 16초, 동경 126도 54분 05초

【별표 2】 경계해역

명 칭	구 분	적 용 수 역
경계해역	흑일도 부근해역	다음 각호의 기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안의 해면 ① 북위 34도 16분 23초, 동경 126도 32분 29초 ② 북위 34도 16분 23초, 동경 126도 31분 19초 ③ 북위 34도 15분 23초, 동경 126도 31분 19초 ④ 북위 34도 15분 23초, 동경 126도 32분 29초
	횡간도 부근해역	다음 각호의 기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안의 해면 ① 북위 34도 15분 59초, 동경 126도 39분 38초 ② 북위 34도 15분 59초, 동경 126도 38분 56초 ③ 북위 34도 14분 59초, 동경 126도 38분 56초 ④ 북위 34도 14분 59초, 동경 126도 39분 38초